

그린스쿨대학원 학사운영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그린스쿨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함)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유사교과목 및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.

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.

하한 취득학점	상한 취득학점	초과 취득학점	연구지도학점
석사 2학기 동안 3학점 박사 3학기 동안 3학점	12학점	3학점	2학점 (매학기 신청)

제 3 조 (필수 이수과목)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중에는 ‘에너지와 환경정책’(3학점)을 이수하여야 하며 ‘에너지공학개론’(3학점)과 ‘환경공학개론’(3학점)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또한 재학기간 중 ‘윤강’(3학점)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48학점 중에는 ‘에너지와 환경정책’(3학점), ‘에너지공학개론’(3학점)과 ‘환경공학개론’(3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 또한 재학기간 중 ‘윤강’(3학점)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석·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에는 ‘에너지와 환경정책’(3학점), ‘에너지공학개론’(3학점)과 ‘환경공학개론’(3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 또한 재학기간 중 ‘윤강’(3학점)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이수과목 지정 및 면제) ① 신입생은 입학후 2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선수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 할 수 있다.

제 5 조 (필수 이수과목 면제)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중 본 대학원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시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.

제 6 조 (영어시험) ① 영어시험은 본교 혹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 시험으로 하며, 성적표(또는 증명서)는 종합시험 원서 접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외부공인기관 시행 영어시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석사과정/박사과정/석·박사통합과정
TOEIC	720
TOEFL	CBT : 215
	IBT : 75
	PBT : 560
TEPS	600

③ 성적은 종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점(종합시험 공고일)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한다.

④ 수료생 또는 5학기(석·박사통합과정은 9학기)이상 재학생으로서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고 B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외국인은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“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

(2급 이상 과정)”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종합시험)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인 ‘에너지와 환경정책’ 1과목과 ‘에너지공학개론’ 및 ‘환경공학개론’ 중 선택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과목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인 ‘에너지와 환경정책’ 1과목과 ‘에너지공학개론’ 및 ‘환경공학개론’ 중 선택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과목 2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.

③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 8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) 각 전공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

2.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각 전공에서 승인한 해외유수학회지(SCI급)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단, 정책전공 학생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)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5월 말일, 후기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) ① 각 과정별 심사용 논문(가제본된 것) 제출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석사 3부

2. 박사 5부

② 논문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

2.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

3.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

4.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(해당자)

③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심사료는 따로 정한다.

제 11조 (심사용논문의 분량)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.

제 12조 (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)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, 크기는 4·6배판(대략 257×188mm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3조 (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)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·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.

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영문개요와 함께 국문개요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보완 논문심사)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·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.

제 15조 (논문심사 위원)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, 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내부교수 3인 이상,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.

⑤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 16조 (박사학위 논문심사 회수)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 17조 (재심사) 논문심사 결과 수정·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- 제 18조 (완제본논문의 용어)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,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.
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 19조 (완제본논문의 온라인 등록)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,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.
- 제 20조 (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)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·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.
 ②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(장)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.
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,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
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, 금박 인쇄로 한다.
- 제 21조 (완제본논문의 판형 및 지질) 완제본논문의 규격은 4·6배판으로 하며,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.
- 제 22조 (완제본논문의 장정 및 양식 차례) 완제본논문의 표지, 내지 등의 장정(裝幀), 작성양식, 차례 등은 일반대학원 논문양식을 에 따른다.
- 제 23조 (완제본논문 활자)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(pt.),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,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.
 ② 학교명칭(高麗大學校·韓國科學技術研究院 GREEN SCHOOL 大學院. Green School, Korea Univ.·KIST)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,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
 ③ 년 월 일과 인(印)은 14포인트로 한다
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(학과, 성명, 지도교수, 석사학위논문, ……제출함, ……완료 함 등).
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.
- 제 24조 (준용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